1. 제정이유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주요내용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간호법」,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고시　제2026-147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외순환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 제28조 제1항의 의사회 소속 전문단체에서 체외순환 관련 진료지원업무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별표 제4호나목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별표]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제2조 관련)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나.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가. 진료기록 초안 작성

나.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다.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라.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마.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가.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1) 일반 관리

-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 예: 누공삽관된 배액관, 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

2) 심화관리

- 기관절개관(T-Tube) 제거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 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

나. 상처.장루.욕창 관리

1)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2) 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
3) 3단계 욕창 드레싱
4) 흡인 드레싱

다.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1) 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 호흡 재활치료 제외)
2) 인공호흡기 설정 (* 예: 압력 조절, 산소농도 조절, 양압 조절 등)

라. 침습적 시술 및 처치

1) 동맥혈 천자
2) 말초동맥관(A-line) 삽입
3) 피부 봉합(Skin Suture)·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4) 피하조직의 절개(Incision) 및 배농(Drainage)

마. 기타 시술 및 처치

1) 외상 후 석고붕대(Cast, 통깁스)
2) 외상 후 부목(Splint, 반깁스)
3) 방광 내 BCG 주입
4) 전립선 마사지
5) 직장수지검사 (※ 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으로 수행, 진단 목적 불가)
6) 분만과정 중 내진
7)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8) 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지원

바. 전문적 시술 및 처치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1) 골수천자
2) 복수천자
3)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 4단계 욕창 드레싱

4. 수술 지원

가. 수술 지원

1)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2)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3)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4)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나. 체외순환

1)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2) 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3)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4)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 비고

1.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제2호에 따라 작성한 기록 초안 등에 대하여 의사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제2호마목의 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가 환자의 특성, 상태, 상황 등에 따른 검사·약물의 처방에 관하여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제3호마목 및 제4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제3호바목의 행위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다.